

상벌세칙

(2019.11.23)



EST. 2018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 SPORTS ASSOCIATION OF USA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세칙근거

본회정관 제 9 장 및 13 장과 70 조(규정 및 세칙)에 근거하여 상벌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상벌세칙은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회원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본체육회가 상벌업무를 공명정대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총괄적으로 시행 집행함과 동시에 모든 동포를 대상으로 포상하여 본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 2 장 포상세칙

제 3 조 포상목적

본회의 회원과 체육단체의 공적을 기리며, 회원 모두에게 홍보하여 회원 개개인 및 단체의 사기를 진작 시킴과 동시에 본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가지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포상대상

- 1 항,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회원 및 체육단체.
- 2 항, 본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 외부인사.
- 3 항, 기타 체육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자 및 공로자.

제 5 조 포상(상패) 종류 구분

- 1 항, 공로를 치하하는 것은 본회 회장을 비롯하여 본회 이하 산하 단체 및 회원에게 주어지는 것이 공로패 또는 공로상장 이라 한다. 즉, 본회 내부에서 행하여진다.

2 항,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본회 내부가 아닌 외부인 또는 외부단체에게 감사패 또는 감사장이 주어 진다.

제 6 조 포상구분및시기

1 항, 대내포상

가) 본회의 승인된 단체및회원에 준하여 포상한다.

나) 공로장 또는공로패로포상한다.

다) 수여시기는 각종행사때에 또는정기총회및 체육인의밤행사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항, 대외포상(감사패)

가) 본회외부인사에준하여포상한다.

나) 감사장또는감사패로포상한다.

다) 시기는해당사업때또는총회및체육인의밤행사때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7 조 포상추천과심사및결정

1 항, 포상추천은 본회양식에의해 포상을 상신한다.

2 항, 본회 회장직권으로 포상 추천할수있다.

3 항, 포상심사는 본회상별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심사 결의한다.

4 항, 의결된 포상의 최종결정은 본회 회장이한다.

5 항, 총회에서 발의하여 결의할수있으며 회장이 최종결정한다.

제 3 장 징계세칙

제 8 조 징계목적

본회의 합리적인운영,회원상호간의질서 그리고 체육단체의 균등한 발전과 불미스러운행위에대한 재발방지를 도모하기위함을 그목적으로한다.

제 9 조 징계대상

1 항, 단체및회원은 다음과같은 행위를하였을때 징계대상이된다.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나) 본회에서 그어떠한 직책이든 본연의직무를 태만하였을때.

다)본회 위계질서문란 및 단체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때.

라)본회회칙에 위반하거나 명시된의무를정당한사유없이수행치아니할때.

마)본회결정사항 및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하였을때.

바) 본회에서 산정한 일정액의회비및 벌과금을 미납하였을때.

사) 회장 승인없이 본회및 회원에관하여 자신이결정,회 내외에 발설하였을때.

아) 본회 내에서 무고하게 법정소송을 하였을때.

2 항, 기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대상이 될수있다

제 10 조 징계의구분

징계를 다음과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항, 본부임원, 지회및 경기단체와 회원의징계를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가)퇴출

나) 직위해제

다) 직무정지

라) 출전정지

마)벌금

바)봉사

사) 집행유예

아) 경고

2 항, 징계를 받는 당사자는 징계기간동안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3 항, 퇴출

가) 본회의 승인된 단체나회원 (본회소속)을취소하는것이다.

나) 본회에속한 단체및이하 산하단체에서 퇴출된자는 본회에속한 타단체및 산하단체에 가입할수 없다.

4 항, 직위해제

가)본회의 임원 또는이사및대의원직책이 박탈된것을 뜻한다.

나) 기타징계와 병행될수있다.

다)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5 항, 자격정지

가)회원및단체 또는직책의자격이 정지되는것이다.

나) 징계기간을 한정지어 자격정지된다.

다) 일정한조건을 충족할때까지라는 조건으로 자격정지된다.

6 항, 직무정지

가)본회의 임원또는대의원의업무가 정지된것을 뜻한다.

나) 시간적인기간을 한정지어 업무정지된다.

다)일정한조건을 충족할때까지라는조건으로 업무정지된다.

라) 직책의 자격은 유지된다.

7 항, 출전정지

가) 본회가주최, 주관하는대회에 회원또는 단체의출전이 정지된다.

나) 정지기간또는 대회출전회수를 한정지어 출전이 정지된다.

다) 일정한조건을 충족할때까지라는 조건으로 출전이 정지된다.

라) 회원및 단체의자격은 유지된다.

8 항, 벌과금형

가) 징계를 벌금으로한다.

나) 모든징계는벌과금형을 병행할수있다.

다) 벌과금형으로만 징계될수도있다.

라) 벌금은 징벌에의한것과 물질적인변상으로 구분한다.

마) 본 세칙에 명시한 벌금은 감액이없다.

바) 모든벌금은 본회자산으로 귀속된다.

사) 징계가해제또는기간이 만료되었다하여도 벌금이미납되었을때에는 완납될때까지 징계가 연장된다.

9 항, 봉사형

가) 본회가주최, 주관하는대회및 행사에 봉사한다.

나) 소속단체에 봉사한다.

다) 회원및 단체의자격은 유지된다.

10 항, 집행유예

- 가) 위반사항에대한 징계를확정하고, 유예기간을두어 징계를 보류하는것이다.
- 나)위반사항에대하여 개선의의지가강하고 다시는반복하여위반하지 않는다고 확신할때 집행유예가 주어질수있다.
- 다)집행유예기간중에 여타징계가있을때 확정된징계에다 유예된징계를 가중하여 징계를 실시한다.
- 라)집행유해시 확정된벌금은 징계확정된날로부터 14 일이내로 완납하여야되으며 벌금 연체시 집행유해가 연장된다.
- 마) 집행유예시 봉사형을 병행할수있다.

11 항, 경고

- 가) 규정위반또는 위반조짐이 있을때 주위를 환기시킨다.
- 나) 경고는 서면으로하며. 규정을 위반하였을때에는벌금이 부과된다.
- 다) 경고는 공개적인것과 비공개적인(회장단신)것으로 구분한다.
- 라) 경고만 시행되었을때에는 본조항 2 항, 규정에서 제외된다.

12 항, 본 체육회납입금 미납자는 본회내외에서 의결권, 선거권또 발언권이 없다.

13 항, 기타 징계구분은 본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징계건의

- 가) 징계건의는 본회이사및 대의원중 3 인이상이 본회정관에따라 서면으로 건의할수있다.
- 나)대회및 행사를주최한 중앙경기단체와 지역체육회보고서에 의하여 건의할수있다.
- 다)위반사안이있을시 본회회장직권으로 징계를 건의할수있다.
- 라) 모든징계건의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 마) 총회에서 부의상정 할수있다.

제 12 조 징계심의

징계심의는 본회소청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한다.

1 항, 상벌위원회의 징계심의및 의결

가)상벌위원회회의의 성원은 재적상벌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된다.

나)본 정관본문에 명시하지않은 상벌의의결은 출석인수의 과반수보다 많은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 모든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라) 의장은 1 차의결에서 의결권이 없다. 단 2 차의결때에는 의결권이 주어진다.

마)상벌대상자또는 대변인은 상벌회의에서만 발언할수있으나 의결권은없다.

바) 상벌위원장은 징계의결사항을 회장에게 즉시보고한다.

2 항, 이사회 징계심의및 의결

가) 성원된 이사회에서 심의하며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나) 모든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다) 의장은 1 차의결에서의결권이없다. 단 2 차의결때에는 의결권이 주어진다.

라)상벌대상자또는 대변인은 상벌회의에서만 발언할수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항, 징계심의에서 총회확정되기까지 자격정지, 직무정지등등을 결정하여야한다.

제 13 조 징계확정

1 항,회장이 임명한부회장을 포함한임원과 분과위원장이 본연의직무를 태만하거나 규정을위반하였을시 회장권한으로 직위해제와 해임하며그외의 징계확정은 총회에서한다.

2 항, 회장, 감사, 명예회장, 상임고문의징계는 소집된 총회에서만 의결확정되며 기타징계는 서면결의총회로 할수있다.

3 항, 본조 1 항규정을따르며 대의원총회에서 징계확정을 다음과같이 한다.

가) 상별위원장은 총회에서 징계의요인과 상별회의 제적및참석인 수, 일시, 장소와 회의결과를 징계별로 보고한다.

나) 총회에서의 징계확정은 토의없이 상별위원회의결의에 가부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총회에서의 징계확정에는징계대상자및 단체의 대의원에게는 의결권및 제적수에서 제외된다.

라)징계가 총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을때에는 이사회로 반송하며,징계를 재심사한후 다시총회에 회부할수있다.

마)총회에 재회부된 징계사항은 토의없이 가부만 결정하며 다시 반송 하지않는것을 원칙으로한다 .

제 14 조 징계대상자의 조치

가) 총회결정에의해 자격정지또는 직무정지가 될수있다.

나) 본회 징계심의의결에서 총회확정때까지 자격정지또는 직무정지를 의결과 동시에 시행된다.

다)본 정관에 명시하지않은 징계대상자의 자격정지와 직무정지는 본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5 조 징계실시

1 항, 총회 징계확정과 동시에 확정된다.

2 항, 본회에서 확정된 징계는 본회의 예하단체 모두에 적용한다.

3 항, 본회 사무처는 확정된 징계사항을 즉시해당자와각단체에문서로통지한다.

제 16 조 징계 재심의

1 항, 징계를받은 단체또는 개인은 본회에 1 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수있다.

2 항, 재심의는 소청상벌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3 항, 재심의된 징계사항은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결을 하여야한다.

4 항, 재 심의된징계는 총회에서 최종확정된다.

제 17 조 사면,복권

1 항, 회장직권으로 징계를받은자는 회장이 사면및 복권 시킬수있다.

2 항, 사면및 복권신청은 본회이사과 대의원중에서 3 인이상 동의하에한다.

3 항, 회장직권으로 사면및복권을 건의할수있다.

4 항, 사면및 복권은 소청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5 항, 총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사면및 복권이된다.

제 18 조 정관에의한 징계의 세분

본회정관제 10 장(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함을원칙으로하며, 다음과같이 징계를 세분한다.

1 항,제 2 조(명칭)에정한 본회명칭또는 유사한명칭을 본회의 승인없이사용한

단체및개인은 본회에 소속및 가입할수없으며,본회에서 자동퇴출된다.

2 항,제 7 조,8 조에 명시된 승인된단체가 본회의 지휘감독을 거부할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의결로 퇴출대상이된다.

3 항, 제 9 조를 시행할때에는 정확한증거에의하여 집행되어야한다.

4 항,본회의 승인된단체가 정당한사유없이 대의원총회에 불참하였을때에는 참가한

대의원 경비에 상응하는 벌과금을 총회에서책정(최소\$300)된다. 또한,2 회이상연속

불참하였을 때에는 본회정관 제 11 조 2 항에의거 자진탈퇴로한다.

5 항, 본회의 분열을조장하는 단체및 개인을 동조하였을때. 다음과같이한다.

가)그들의 행사또는 대회에 참가한개인은\$500 벌금과 최고퇴출까지 될수있다.

또한,그자가 소속된단체는\$1,000 벌금과 최고자격정지까지 될수있다.

나)정상적인 절차(회의)없이본 회에서이탈을선 동하는자는\$500 벌금과 최고 퇴출
까지될수있다.

6 항,정관제 19 조(직책별의무및권한)각관은 직무태만시에는 차후결과에 대하여
책임을져야하며, 본회의 징계대상이 될수있다.

7 항,제 46 조(수입)1 항 수입금을 본회에 귀속하지아니하고 여타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 을때 다음과같이 징계된다.

가)본회 사업목적 이외에 개인적으로 또는 본회 승인없이 사용하였을때에는
\$500.00 벌금과 최고퇴출까지된다.

나)그누구라도 사법당국에 고발및언론에 공개될수있다.

다)사용한 금액을 모두 본회에 반환해야하는 책임을진다.

8 항,정관제 46 조(수입)본회 사업목적이외에 그어느개인이 여하한 목적으로든지
본회 명의를 도용하여 모금한사실이 확인되었을때에는 다음과같이 징계된다.

가)그누구든 본회 명의를도용하여 모금한 사실이확인되었을때에는 \$500.00
벌금과 최고 퇴출까지 된다.

나)그누구라도 사법당국에 고발및언론에 공개될수있다.

다) 모금금액을 기부금당사자에게 변상책임을진다.

제 19 조 징계규정에의한 징계세분 본회 정관징계규정에 준하여 아래와같이 징계를

세분한다.

1 항, 본 정관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가) 본회 정관 및 세부규정을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규정대로 처리되며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상응하게 조치한다.

나) 본회에서 정상적인 절차(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규정에 상응하게 조치한다.

2 항,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가) 본회 임원 및 회원이 여타 행동 및 언행에 의하여 본회를 훼손하였을 때 \$3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까지 될 수 있다.

나) 그누군가가 본회 임원을 모함하여 본회를 훼손하였을 때 \$5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까지 될 수 있다.

다) 본회 회원이 기타관계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회 상벌위원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3 항, 본회 및 체육단체간에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가) 직책의 권한을 무시하고 음해 하였을 때는 해당자는 본회 상벌위원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받는다.

나) 권한내의 지시사항을 무시하였을 때에는 \$3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까지 된다.

다) 본회 규정 및 결정사항 불복종을 선동하는 자는 \$500 벌금과 최고 퇴출까지 될 수 있다.

4 항, 본회에서 결정된 일정액(회비, 참가비, 출전비, 벌금, 기타경비) 미납자와 단체.

가) 본회 납입금 미납자(단체)는 본회 내외에서 의결권, 선거권 또는 발언권이 없다.

나) 명시한 기간내에 의무금 미납시 본회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대상이 된다.

또한, 벌금이 가산될수도 있으며 최고 자격정지될수있다.

다) 벌금 미납자(단체)는 완납이될때까지 본회에서 권리가 박탈된다.

제 20 조 선거운영세칙의 징계세칙

1 항, 선거기간중에 선거규정위반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 차적으로 선거 운영규정대로 조치 한후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다음과같이 징계를세분한다.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중 부정또는 기타 공정선거에 위배되는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을때에는 본회 선거세칙에의거 본회 대의원총회에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개선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전원또는일부를개선(교체)한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한다.

나) 후보자 등록비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이외로 사용되었을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상하여야한다.

다) 후보자 등록비를 식사, 향응, 음료등 먹는비용으로 사용전용하였을시에는 당사자가 사용한 모든비용을 전액변상하고 차후본회에서 유사한직책에 임명 될수없다.

2 항, 회장 입후보자가 4 명대의원의추천서보다 많은추천서를받았을경우 초과된 추천인 1 인당\$1,000.00 씩 벌금이부과되며 선거운영세칙에의하여 조치된다.

3 항, 각 대의원은 1 인의회장입후보만을 추천할수있으며 1 인의이상을 추천하였을경우 \$500.00 벌금과 회장입후보 등록방해로 간주되어 최고 자격정지까지징계된다.

4 항, 회장선거에서 입후보자와 후보자, 당선자가 다음과같은 행위를하였을때. 각 1 종목당\$1,000.00 벌금이 부과되며 선거운영세칙에의하여 조치된다.

가) 후보 또는후보측의일원이 선거업무를 고의로 방해했을때.

나) 입후보등록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하자나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다) 선거집행부와 후보간에 결탁하여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라) 회장선거에서 후보의 상대방과 결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마) 후보간 결탁하여 당선을 위하여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바) 후보가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사) 투표권자에게 음식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때.

아) 대리투표 및 무더기(집단)투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주도했을 때.

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차) 상대후보를 근거없이 비난, 비방 또는 인신공격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항, 선거로 인하여 본 체육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본회 징계 대상이 된다.

제 21 조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체육대회 본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에서 각종 사고시 다음과 같이 징계를 세분한다.

1 항,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가) 대회규정에 위배되는 부정선수 개인은 \$100.00 벌금과 최고, 2 개 대회 연속

출전정지로 하며, 또한, 해당단체(팀)는 \$300.00 벌금과 최고 1 개 대회 출전정지로 징계된다.

경기중 또는 경기후 심판을 폭행한 회원은 퇴출되며, 폭행한 회원은 차후

민사와형사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해당단체(팀)는 \$1,000.00 벌금과 최고 2 개 대회 출전정지로 징계된다.

나) 경기장안, 밖에서 주심, 선심에게 폭언을 하는 회원은 \$100.00 벌금과 최고 2 년 자격정지로 한다.

또한, 해당단체(팀)는 \$200.00 벌금과 경고로 징계한다.

다) 경기장내, 외에서 회원간 폭행을 한 회원은 \$200.00 벌금과 최고 3 개 대회 출전

정지로한다.

또한,해당단체(팀)는\$500.00 벌금과 최고 2 개대회 출전정지로 징계된다.

라)대회장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한 단체(팀)와해당회원은 4)와같은 징계를하며, 해당단체(팀)는\$1,000.00 벌금과 최고 2 개대회 출전정지로 징계한다.

마)경기장내,외에서 회원간 폭언을한회원은 \$100 벌금과 최고 1 개대회 출전정지로 징계한다.

바)경기장내,외에서 행사통제본부요원을 폭행한회원은 \$300.00 벌금과최고 3 개대회출전정지 로한다. 또한, 해당단체(팀)는\$500.00 벌금과최고 2 개대회출전정지로징계한다.

사) 경기장내, 외에서 행사통제본부요원에게 폭언을한 회원은\$100.00 벌금과 최고 1 개대회출전정지로 징계한다.

아)대회 본부통제에 불응하는회원은\$50.00 벌금과최고 3 개대회 봉사형으로 징계한다.

자) 경기중 경기장밖으로 무단이탈하는선수는 최고 출전정지로 징계한다.

카)대회 운영본부를 점거하거나 대회운영에지장을 초래하는회원은\$200.00 벌금과 최고 2 개 대회 출전정지로한다. 또한, 해당단체(팀)는\$500.00 벌금경고로 징계한다.

타) 대회장에서 기물을파손하는자는\$300.00 벌금과 최고, 제명으로 징계하며. 또한, 가해자가 소속한단체(팀)는\$500.00 벌금과 파손된 기물의변상을포함하여 모든것을 책임 진다.

2 항, 본회가주최, 주관하는행사

가)행사장에서 폭행을한 회원은\$200.00 벌금과 최고 회원의자격이 정지된다.

나) 행사장에서 폭언을한회원은\$100.00 벌금이 부과된다.

- 다)행사장에서 행사통제요원을 폭행한 회원은\$300.00 벌금과 최고 퇴출조치된다.
- 라)행사장에서 행사통제요원을 폭언한회원은\$100.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된다.
- 마)행사본부통제에불응하는 회원은\$50.00 벌금과 최고 3 개행사 봉사형으로 징계한다.
- 바) 행사운영본부를 점거하거나 대회운영에 지장을초래하는회원은\$200.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로한다. 또한, 단체는\$500.00 벌금과 최고 자격정지로징계한다.
- 사) 행사장에서 기물을파손하는자는\$300.00 벌금과 최고 퇴출까지징계하며, 가해자는 파손된 기물의변상을 포함하여 모든배상을책임진다. 또한, 해당단체(팀)는\$500.00 벌금과최고 2 개대회 출전정지로 징계한다.
- 3 항,전 미주한인장애인 체육대회참가때 문제발생시 상기와같이 조치한다.

제 22 조 부칙

- 1 항, 징계가 종료가되었다하더라도 벌과금을 완납할때까지 징계가 연장된다.
- 2 항, 본회 납입금, 의무금, 벌과금, 참가비등 미납자(단체)는 본회내외에서 의결권, 선거권및 발언권이없다.
- 3 항, 징계집행중인당사자가 본회가개최하는 교육(인성, 지도자, 심판교육등)에참가교육을 이수받거나, 본회행사에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하였을때에는 벌칙을 감면받을수있다.
- 4 항,현재 징계가 집행중인회원과 단체(팀)가 징계대상이될때에는 벌칙이 배로 가중된다.

•본 상벌세칙은 총회에서 수정 확정되는 그 즉시효력을갖는다. •